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42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이춘석·한병도·윤준병

장철민 · 김윤덕 · 정준호

정동영 · 이연희 · 박홍근

임미애 · 이원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운동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제6조의2 등).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한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 득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2제1호 중 "입 장권등을 부정판매한"을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으로 한다.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정보통신망 이</u>	② <u>입장권등을</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1</u>	
	천만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	
	산상 이득의 가액(이하 "이득	
	액"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u>한 자</u>	
<u>1.·2.</u> (생 략)	<u>2.·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생략)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6. (생략)

③ ~ ⑤ (생 략)

같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년	법
일부기	개정법률		
제492	조의2(벌칙)		

- 1. -----<u>5</u>
 00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 2.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5
 00만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한 자
- 2. ~ <u>7.</u>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